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08 호 2019. 12. 12.(목)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4호[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5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6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7호[울산광역시 북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8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예 규

-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9호[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지침]..... 23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4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332호[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5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3조)
- 사무직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4조 ~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를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로 하고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를 “매곡동 392~615, 650~
 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산동 53, 53-1~53-9번지(76,515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부지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 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 수정 (제2조)
-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 확대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읍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읍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6조(겸직금지) 읍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제9조(직무 대상기관) 옴부즈만이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3. 구의 사무위탁 기관·단체 및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직원·민원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그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ombudsman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각하)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시정권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등(제3조 ~ 제4조)
-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직무, 대상기관 등(제5조 ~ 제10조)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등(제11조 ~ 제14조)
-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제15조 ~ 제20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제21조)
- 운영지원(제2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수수료 (단가)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1ℓ 당 6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1ℓ 당 60원		
	소규모사업장	1ℓ 당 12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1년	단독주택	1ℓ 당 7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 당 70원		
	소규모사업장	1ℓ 당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2년	단독주택	1ℓ 당 8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 당 80원		
	소규모사업장	1ℓ 당 1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 0.8kg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대 상	용기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3 l	165.6	14.4	180	전용수거 용기사용
		5 l	276	24	300	
	공동주택	60 l	3,384	216	3,600	
		120 l	6,768	432	7,200	
	소규모 사업장	20 l	2,256	144	2,400	
		60 l	6,768	432	7,200	
120 l		13,536	864	14,400		
2021년	단독주택	3 l	193.2	16.8	210	
		5 l	322	28	350	
	공동주택	60 l	3,948	252	4,200	
		120 l	7,896	504	8,400	
	소규모 사업장	20 l	2,632	168	2,800	
		60 l	7,896	504	8,400	
120 l		15,792	1,008	16,800		
2022년	단독주택	3 l	220.8	19.2	240	
		5 l	368	32	400	
	공동주택	60 l	4,512	288	4,800	
		120 l	9,024	576	9,600	
	소규모 사업장	20 l	3,008	192	3,200	
		60 l	9,024	576	9,600	
120 l		18,048	1,152	19,200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주) 1. 소규모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 (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매년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별표1)
 - 주택(ℓ 당) : 50원→60원(2020년)→70원(2021년)→80원(2022년)
 - 소규모사업장(ℓ당) : 100원→120원(2020년)→140원(2021년)→160원(2022년)
- 울산광역시 4개구와 통일성 있게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 조정(별표2)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9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에 참석하는 사람은 투자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자료 및 잠재투자가 관리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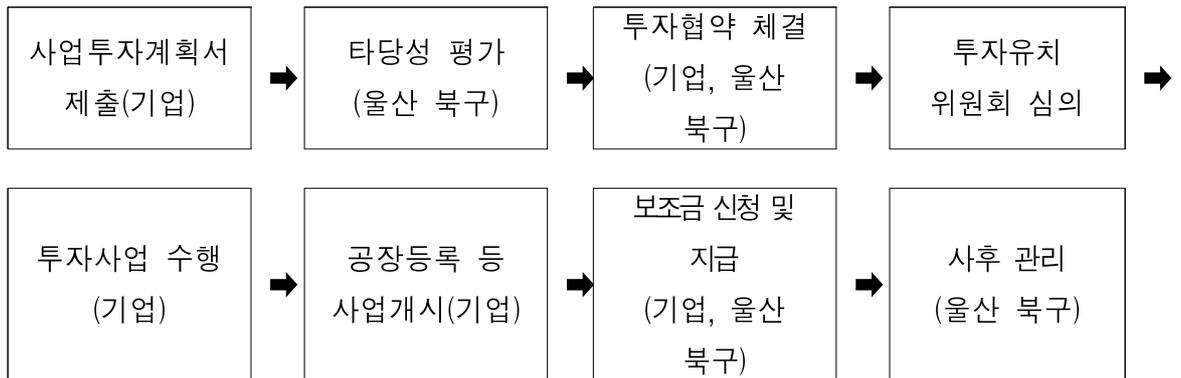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
 - ② 투자사업장을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체계) 보조금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사업투자계획서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타당성 평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 1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투자이행내역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협약 체결)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행위일(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 ② 울산광역시 북구는 투자협약 전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행위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에 대한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다만, 규칙 제9조제1항의 투자 규모에 준하는 경우 최초 입지 계약 체결일 이후 투자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을 포함한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에 대한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청할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
3.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

④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과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가.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평가 적정성 심의
 - 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규모(한도액) 결정
 - 다.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2. 불분명한 사항 등 보조금 지원기준 해석
 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보조금 관련 심의·의결 및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투자사업의 수행) ① 투자유치기업은 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의 연장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

3.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
5. 투자업종의 변경
6. 기업 소유·구분의 변경
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사업투자계획서 외의 건물 신축 및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투자유치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투자이행내역서와 그에 따른 사업투자이행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기업이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
2.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 보조금 사업투자이행확약서를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을 것
3. 투자유치기업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 할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해당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정산)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와 사업투자이행내역서 등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사업이행 상황 점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투자유치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 결정일을 말한다)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 미체결 사업
 2. 제1호에 따른 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미착공 사업
 3.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과 실제 사업개시일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4.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고용보조금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 ④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및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 기업이 사업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사업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한다.
- ⑤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이자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 ⑥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관련)****[기존기업]****①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수
20% 이상	10
15% ~ 20% 미만	8
10% ~ 15% 미만	6
0% ~ 10% 미만	4
0%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 \times 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B)

$$= \frac{(\text{직전 1년도 매출액} \times 3) + (\text{직전 2년도 매출액} \times 2) + (\text{직전 3년도 매출액} \times 1)}{6}$$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②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 가중평균**	점수
10% 이상	10
7% ~ 10% 미만	8
4% ~ 7% 미만	6
0% ~ 4% 미만	4
0% 미만	2

* 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 \frac{(\text{직전 1년도 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 2년도 } " \times 2) + (\text{직전 3년도 } " \times 1)}{6}$$

③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20명 이상	10
15명 ~ 20명 미만	8
10명 ~ 15명 미만	6
5명 ~ 10명 미만	4
5명 미만	2

※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④ 기업신용등급 등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 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⑤ 업 력

업 력	점수
기업 설립 5년 초과	10
4년 초과 ~ 5년 이내	8
3년 초과 ~ 4년 이내	6
2년 초과 ~ 3년 이내	4
2년 이내	2

[창업기업]**①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기술경영 능력	점수
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탁월)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10
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우수)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8
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양호)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5이상 ~ 10년 미만	6
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보통)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3이상 ~ 5년 미만	4
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미흡)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미만	2

② 기술개발 전담부서 설치

설치현황	점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0
전담부서 보유	8
외부연구기관과 기술개발계약 체결	6
실험분석실	4
없음	2

③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사업화 및 시장경쟁성	점수
사업화 가능성 및 제품경쟁력(탁월)	10
사업화 가능성 및 제품경쟁력(우수)	8
사업화 가능성 및 제품경쟁력(양호)	6
사업화 가능성 및 제품경쟁력(보통)	4
사업화 가능성 및 제품경쟁력(미흡)	2

④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BBB- 이상	1, 2 등급	10
BB- 이상	3, 4 등급	8
B0 이상	5 등급	6
CCC- 이상	6 등급	4
CCC- 미만	7 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⑤ 매출성장성

매출성장성	점수
지속적이고 높은 매출성장 예상	10
지속적인 수익 흐름이 예상	8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예상	6
발생하는 수익이 약간 있고, 주기적 발생예상	4
기술제품의 수익이 적고, 간헐적 발생예상	2

[공 통]**⑥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억원당 1점
토지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 소수점 이하 버림

⑦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시점

착공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 시점	점수
1년 이내	10
2년 이내	8
3년 이내	6
4년 이내	4
4년 초과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 기일부터 기산

⑧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관내 상시고용인원	1명당 2점

* 사업투자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⑨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2점 가산**⑩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최대 4점**

- 특허권 보유 : 2점
- 실용신안권 보유 : 1점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 1점

[별표 2]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제11조제2항관련)

□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

구 분	내 용
협약용자금 이차보조금, 전 기 요 금 지원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정산금액} = \text{위원회 보조금 지원 결정액} \times (1 - \text{투자금액 미달률})$ </div> ※ 투자금액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 - 실제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보다 클 경우 투자계획금액으로 같음 하여 계산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미달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 까지 계산
고용보조금	- 보조금 지원 후 의무고용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 못한 인원 수에 대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평균 상시고용인원을 점검하며, 지원조건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다음 점검 시까지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점검 시 미달할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사업 이행기간 해에 미달할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0000 □□생산공장

사업투자계획서

제출일자 :
기업체명 :
대 표 자 :

참 고 사 항

-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1. 기업개요

기업체명(주소) :		()	
대표자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칭	
기업규모		주요 생산품	

2. 기업소개

회사소개

○ 연혁, 생산품 개요, 기술력 등
*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 포함

주요 매출처
(국내)
(수출)

기존업종의 업황

관계회사 현황

그 밖의 사항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자비용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II 투자 계획

1. 투자개요

구 분		주 소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소유구분
기존 사업장	계				소유 / 임차
	공장1				소유 / 임차
	공장2				소유 / 임차
	공장3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본사				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 종 명 칭		
투자금액(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계			
	계				
	토지 매입				
설비 투자	소계				
	건설				
	기계장비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사유 및 업황

투자 사유

투자 업종의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생산품목 설명	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4. 고용계획

구 분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	연도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 (A+B)	고용사유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5. 자금조달 계획

자금 조달계획(단위: 천원)					
자기자본		외부조달		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단위: 천원)					
구분	항목	조달시기	금액	완료여부	비고
자기자본	보유현금	2019. 5		완납	토지비 10%
	매출채권	2019. 7		완납	건축비 20%
	영업이익('18.3분기)	2019. 8		예정	토지비 30%
	영업이익('18.4분기)	2019.12		예정	토지비 30%
	소계				
외부자본	폐광대체융자금	2019. 3	1,000,000	예정	건축비 잔금(70%)
	대출(KB삼산지점)	2019. 5	500,000	예정	기계A
	대출(중진공)	2020. 1	200,000	예정	기계B 등 10종
	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 <input type="checkbox"/>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6. 투자 수행 계획

○ 투자사업장 투자수행 계획

투자일정	투자내용	비고
'19. 5. 11.	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계 작성)	

○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구 분	주 소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장등록 말소일	공장 매각일
계					
본사				'19. 5. 11.	'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설비명	수 량	재 배 치 내 역		비 고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고속프레스기	2	아산 1공장 2층	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	인원수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당초	30	30	0	
변경	60	25	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유				

Ⅲ 투자 기대효과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공장등록 후 5년]								
연 도	N*+1 *공장등록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추정 IRR: %				NPV: 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연관효과 등 포함

3. 그 밖의 참고사항

세부 투자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내용연수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제외)	비고 (용도)
총계								
토지매입	토지매입비합계						1,330,183	
	공장용지	**농공단지	-	-	m ²	7,025.00	189.35	1,330,183
건설투자비용 (한국감정원발행'건물신축단가표'참조-작성)	건설투자비합계		총고		m ²	5,600.63	-	4,647,767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7m (1개층)	20	m ²	2,100.00	773.28	1,623,879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4.5m (1개층)	20	m ²	820.00	722.00	592,040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3개층)	15	m ²	1,700.63	871.00	1,481,248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2개층)	15	m ²	980.00	970.00	950,600
기계장비구입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비품, 사무용기기, 가구및집기, 조경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또는렌탈비용제외)	기계장비구입비합계		용량		대	84	-	6,485,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00,000	400,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50,000	5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20KW	15	대	4	92,500	37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30KW	15	대	4	112,500	45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50KW	15	대	4	150,000	6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80KW	15	대	4	250,000	1,0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148KW	15	대	2	250,000	500,000
	CD삽입기	모델명	15KW	15	대	1	400,000	400,000
	레이저마킹기	모델명	0.1KW	15	대	2	50,000	100,000
	냉각설비	모델명	150RT	15	대	1	200,000	200,000
	COMPRESSOR	모델명	22KW	10	대	2	45,000	90,000
	냉각수조	모델명	0.33m ³	10	대	8	6,250	50,000
	재이용수조	모델명	13m ³	10	대	2	40,000	80,000
	건조시설	모델명	0.11m ³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24m ³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32m ³	10	대	2	50,000	100,000
	분쇄기	모델명	18.7KW	10	대	2	100,000	200,000
	배합기	모델명	2TON	10	대	5	60,000	300,000
	호이스트	모델명	-	10	대	2	100,000	200,000
	지게차	모델명	3.5TON	10	대	2	70,000	140,000
	CAD	모델명	-	6	대	10	5,000	50,000
	열간내압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35,000	235,000
파괴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M측정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 1)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2)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이상, 개별단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

의안번호	
년 월 일	

심의

안 건 명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출일자	20 . .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기업개요

기업명, 기업규모, 업종, 주요생산품, 주거래처, 관계사 등 일반사항

경영실적(재무구조)

(단위 : 천원, %, 해당연도)

총자산(A)	총부채(B)	자기자본(C)	부채비율 (B/C)	자기자본비율 (C/A)
			%	%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순유동자산 (A'-B')	당좌자산(C')	당좌비율 (C'/B')
				%
단기차입금 (A'')	장기차입금 (B'')	사채 및 기타 (C'')	차입금의존도 (A''+B''+C'')/A	미처분이익 잉여금
			%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매 출 액			
영업이익			
순 이 익			

○ 매출액 증감사유:

○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감사유:

고용현황(최근 3년간)

구분	상시고용인원(매년 평균)			
	20 년	20 년	20 년	신청 시(12개월)
고용인원(계)				
본사 및 공장				
00공장				
00공장				

○ 고용인원 변동사유

그 밖의 사항(인증, 특허 등)

나. 투자계획

투자사유

투자유형

투자사업장 업종 : 주요생산품, 기존사업장 업종 등

사업장 현황

구 분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계	m ²	m ²
	(본사 및 공장) 00 000	m ²	m ²
	(공장) 00 000 00 00	m ²	m ²
	(공장) 00 000 00 00	임차	m ²
투자사업장	(공장) 울산 00 00 00	m ²	m ²

- 신규 고용창출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투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투자규모	투자내용	비 고
계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	m ²
설비 투자	소계			
	건설투자		- 1동 공장 : 건축연면적 m ² - 2동 공장 : 공장연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기계장비		- 000, 000, 000 등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자기자본	외부자본	담보대출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조달금액			부채비율	%
세부조달계획	보유현금	은행대출	순유동자산	

- (자기자본) 보유현금 : 0,000,000천원
-
- (외부자본) 000,000,000천원 조달계획
 - 00은행 시설자금 000,000천원(0000.00.00. 예정)
 - 00은행 시설자금 00,000,000천원(0000.00.00. 대출확정)
 - 00은행 시설자금 0,000,000천원(0000.00.00. 입금완료)

보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보조금 지원 한도액					

 다른 보조금 수령 여부

 진행경과 :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타당성 평가 실시(00점), MOU 체결

붙임 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타당성 평가기준 및 평가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기존기업] 대상기업 적격평가 (50)	1. 사업실적	2	4	6	8	10	
	2. 영업이익률	2	4	6	8	10	
	3. 상시고용인원	2	4	6	8	10	
	4. 기업신용등급	2	4	6	8	10	
	5. 업 력	2	4	6	8	10	
[창업기업] 대상기업 적격평가 (50)	1. 경영자의 기술능력	2	4	6	8	10	
	2. 기술개발전담부서 설치	2	4	6	8	10	
	3.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2	4	6	8	10	
	4. 기업신용등급	2	4	6	8	10	
	5. 매출성장성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	6. 신규투자금액	20점 만점					
	7. 투자완료시점	2	4	6	8	10	
	8.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1 ~ 2점(20점 만점)					
가점요소	9.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정 (벤처, 이노·메인비즈 등)	2점					
	10. 특허권 등 보유 (특허권 2점, 실용신안권, 의장·상표등록 1점)	최대 4점					
총점							

20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직인)

[별지 제4호서식]

[주]0000 □□생산공장

사업투자이행내역서

제출일자 :
기업체명 :
대 표 자 :

참 고 사 항

-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기업체명(본사 주소) :		()	
대표자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칭	
기업규모		주요 생산품	

II 사업 투자이행내역

1. 투자이행내역

투자사업장						
기업체명	주소		대지면적 (m ²)	건물 연면적(m ²)	소유구분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일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명칭				
투자금액(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계	20	20	20	20
	계					
토지 매입						
설비 투자	소계					
	건설					
	기계장비					
	근로환경					

* 세부 투자이행내역서 별도 제출

2. 고용실태

구분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	연도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 (A+B)	고용 사유
		20	20	20	20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3. 자금조달 상황

자금 조달상황(단위: 천원)				
자기자본	외부조달		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조달시기	금액	비고
자기자본	보유현금	2019. 5		토지비 10%
	매출채권	2019. 7		건축비 20%
	영업이익('18.3분기)	2019. 8		토지비 30%
	영업이익('18.4분기)	2019.12		토지비 30%
	소계			
외부자본	폐광대체융자금	2019. 3	1,000,000	건축비 잔금(70%)
	대출(KB삼산지점)	2019. 5	500,000	기계A
	대출(중진공)	2020. 1	200,000	기계B 등 10종
	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내역		<input type="checkbox"/> 있음(세부내역 첨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 <input type="checkbox"/>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4. 투자이행내역

○ 투자사업장 투자이행내역

투자일정	투자내용	비고
'19. 5. 11.	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게 작성)	

○ 기존사업장 처분 내역(해당 기업만 작성)

구분	주 소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장등록 말소일	공장 매각일
계					
본사					
공장1					
공장2					
연구소					

○ 설비 및 고용 재배치 내역(해당 기업만 작성)

설비명	수량	재 배 치 내 역		비고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인원수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당초				
변경				
재배치 사 유				

Ⅲ 투자 기대효과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공장등록 후 5년]								
연 도	N*+1 <small>*공장등록</small>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추정 IRR: %				NPV: 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연관효과 등 포함

3. 그 밖의 참고사항 : 투자사업장 건축연면적 산출 내역

세부 투자이행내역서 (II. 사업 투자이행내역, 1. 이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내용연수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제외)	비고 (용도)
총계								
토지매입	<i>토지매입비합계</i>						1,330,183	
	공장용지	**농공단지	-	-	m ²	7,025.00	189.35	1,330,183
건설투자비용 (한국감정원발행'건물신축단가표'참조-작성)	<i>건설투자비합계</i>		총고		m ²	5,600.63	-	4,647,767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7m (1개층)	20	m ²	2,100.00	773.28	1,623,879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4.5m (1개층)	20	m ²	820.00	722.00	592,040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3개층)	15	m ²	1,700.63	871.00	1,481,248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2개층)	15	m ²	980.00	970.00	950,600
기계장비구입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및집기, 조경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또는렌탈비용제외)	<i>기계장비구입비합계</i>		용량		대	84	-	6,485,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00,000	400,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50,000	5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20KW	15	대	4	92,500	37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30KW	15	대	4	112,500	45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50KW	15	대	4	150,000	6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80KW	15	대	4	250,000	1,0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148KW	15	대	2	250,000	500,000
	CD삽입기	모델명	15KW	15	대	1	400,000	400,000
	레이저마킹기	모델명	0.1KW	15	대	2	50,000	100,000
	냉각설비	모델명	150RT	15	대	1	200,000	200,000
	COMPRESSOR	모델명	22KW	10	대	2	45,000	90,000
	냉각수조	모델명	0.33m ³	10	대	8	6,250	50,000
	재이용수조	모델명	13m ³	10	대	2	40,000	80,000
	건조시설	모델명	0.11m ³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24m ³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32m ³	10	대	2	50,000	100,000
	분쇄기	모델명	18.7KW	10	대	2	100,000	200,000
	배합기	모델명	2TON	10	대	5	60,000	300,000
	호이스트	모델명	-	10	대	2	100,000	200,000
지게차	모델명	3.5TON	10	대	2	70,000	140,000	
CAD	모델명	-	6	대	10	5,000	50,000	
열간내압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35,000	235,000	
파괴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M측정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 1)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2)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단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

20	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및 대표자 직위)	성명	(인)
20	년	월	일	확인자 경제일자리과	급	성명 (인)
20	년	월	일	확인자 경제일자리과	담당	성명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기업 지원을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투자유치기업 지정을 위한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의무화(제5조)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서 기준 마련(제6조)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명시(제7조)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 명시(제8조)
- 보조금 사후관리 규정(제12조)
-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제13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4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박상진2로 102	화봉동 1488-1	2019-12-12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1332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최 민 *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길 16-5
소하천명		가 동 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가대동 935번지		
	면적	4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12. 09. ~ 2023. 05. 31.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설치(교량)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